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그 전일까지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先보증後등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및 임대사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